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
3.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·5. (생략)</p>	<p>제7조(사업비의 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</u></p> <p>3. <u>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</u></p> <p>4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6.·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